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제35조의2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법」 제35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대·빈번한 교통 사고를 유발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우수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을 취소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8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일부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8조의2제2항제2호 중 “최근 3년간”을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최근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3.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

키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①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신 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신 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u> <u><신 설></u> ③ ~ ⑤ (생략)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말한다.</u>	2. <u>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u> <u>최근 3년간</u>----- ----- ----- ----- 3. <u>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u> <u>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u>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u>----- --.
---	--